

이주민 환대 지수(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개발 연구*

한준성** · 최진우***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이민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에 환대(hospitality)에 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대는 사회적 소수에 대한 시혜적 태도, 위계적 접근, 공존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 맺기의 유형들, 즉 관용, 증여, 인정의 한계를 넘어 탈경계성, 수평성, 공생성에 기반한 태도와 행위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이민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치 거버넌스의 지적 토대로서 이주민 환대 지수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지표체계는 권리, 소통·문화, 사회경제의 세 영역에 걸쳐 총 15개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국은 23개 OECD 회원국들이며, 동일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환대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생하는 이민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통·문화 영역과 안전·보호 부문에서 이주민 환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긴급하며,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의 권리 친화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핵심어: 이주민, 환대 지수, 권리, 소통·문화, 사회경제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주저자), babaro79@gmail.com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교신저자), jinwooc@hanyang.ac.kr, 논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민주화, 탈냉전, 지구화를 겪으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다원화가 심화되어 왔다. 시민운동의 확산 속에서 그간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던 사회적 소수 집단들이 결사 활동과 사회 운동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가치와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주류사회와 이들의 접촉 기회가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탈북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배경이동, 난민 등 다양한 면면을 가진 이주배경인구의 규모가 꾸준히 증대해 왔다. 2017년 12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2,180,49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0년 전(2007년, 107만여 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또한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적 이주민의 장기체류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추세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물음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질문들, 이들의 호소와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이들과의 관계 맺음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들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행정의 목표, 기능, 가능성은 어떻게 새롭게 사고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은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발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매우 심각한 정치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오해와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회적 소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민들은 종종 ‘한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건강권, 가족동반권 등 기본적 권리 보장에 있어서의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인종, 젠더, 계급이 중첩된 억압 구조 속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인 아동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차별, 그리고 학교의 수용 기피로 인해 상처받는다. 탈북민은 자신들에 대한 법제도상의 ‘특별’한 대우에도 불구하고—혹은 그러한 특별대우가 갖는 타자화의 효과로 인해—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외에도 이슬람 등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런 가운데 이주민의 문화와 정체성의 ‘낯섦’은 적절한 소통 창구가 결여된 가운데 발생하는 오인과 오해 속에서 이들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적 반응과 기피의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극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혐오나 적대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이주민 집단에 대한 적대적 타자화의 누적과 확산은, 그것에 대한 민주적 제어 장치(이를 테면 실효적인 차별금지법)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화정치적 갈등과 폭력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이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법적 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심리적·문화적·법적 경계들과 그 기저에 놓인 위계적 권력 관계를 해체적으로 사유하고,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평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환대(hospitality)’의 개념을 제시한다.

환대는 낯선 존재인 사회적 소수의 호소를 경청하고 이들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열린 태도이다. 그렇기에 환대의 핵심은 사회적 소수에 대한 ‘인식’에 있지 않다. 환대는 낯선 타자에 대한 태도, 즉 ‘윤리’의 문제이다(채석진 2017; 문성원 2018). 환대의 윤리는 ‘우리’와 ‘타자’라는 이항대립의 위계적 경계 짓기를 문제시하면서 고착화된 정체성 정치를 해체하고 공생의 문화를 다지려는 담론과 실천, 즉 환대의 정치를 독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환대 개념을 그것이 갖는 이상적, 낭만적 색채를 이유로 현실과 유리된 개념으로 치부하거나 환대의 현실적 한계를 강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대 개념에서의 한계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고되고 변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Phipps and Barnett 2007,

244-245). 특히 환대의 결핍, 혹은 홀대로¹⁾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과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환대의 윤리가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첫째, 환대 결핍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개인적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가운데 한국과 자신의 모국 모두의 발전(transnational development)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이를테면 교육 현장에서 환대 결핍으로 인한 탈북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축시키고 사회 발전의 자원인 인적 자본의 축적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또한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긴요한 개방 경제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방인에 대한 홀대는 국가의 위신과 브랜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훼손하게 된다.

둘째, 환대는 ‘그들(타자)’뿐 아니라 ‘우리(자아)’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낯선 존재의 문화나 정체성과의 접촉을 통해 그전까지 미처 생각하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고하고 발견함으로써 자신과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환대는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자아 형성의 열린 과정이다. ‘타자’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정치공동체의 평화를 지탱하는 주체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상호 이질적으로 인식되었던 문화들 내지는 정체성들 간의 교류, 이해, 평가를 통해 구성원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뿐 아니라, 문화 다양성과 공생 문화가 사회의 각 영역에 걸쳐 촉진된다.

셋째, 환대 결핍은 사회적 소수의 삶을 더욱 곤고(困苦)하게 만든다. 타자화를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민 가운데 상당수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기도 하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 소수민의 호소에 대한 무시나 몰각은 이들이 겪는 고통과 폭력의 현실을 비껴가거나 방조하게 만든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1) 여기에서 홀대는 배제, 적대, 차별, 주변화, 위계적 서열화, 타자화 등 다양한 양상을 포괄한다.

소수의 인권과 자유는 보다 손쉽게 치안이나 경제와 교환 관계에 놓이게 되며, 제도와 환경의 확대 결핍이 고착화될수록 이후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민사회를 대비해야 할 한국사회에 ‘확대’를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를 전문가 집단 내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과 보다 용이하게 소통하기 위해 이주민 확대 지수(HI: Hospitality Index)를 개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확대 개념을 설명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그것의 이론적, 철학적 차원(정치적 이상)과 현실적, 정책적 차원(정치적 현실)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확대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론화하고자 할 때 이 두 차원 사이에 반성적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 확대 지수는 바로 그러한 가교로서 한국사회의 확대 수준이 당위의 차원에서 협소하게 사고되는 것을 보완하고, 그 다층적 성격을 객관적 지표들로 측정함으로써 이민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를 위한 문화정치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확대’ 개념 정의

확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확대가 다른 유사 개념들과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관용(tolerance)’과 ‘증여(gift),’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지탱하는 원리로서의 ‘인정(recognition)’을 확대 개념과 비교해볼 수 있다.

먼저 관용을 보자. 관용은 어원적으로 ‘참다,’ ‘견디다’ 등의 의미를 갖는 라틴어 동사 *tolere*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관용 개념에 깊게 आरो새겨져 있다. 피터 니콜슨(Peter Nicholson)에 따르면 관용은 “관용자(tolerator)의 도덕적 기준에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관용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압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

하지 않고 그 차이의 존재를 용납하는 것”이다(박경래·박미량 2009, 6 재인용). 이처럼 관용은 타자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동화’ 패러다임에 비해 타자에 관대한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은 경청이나 교류와는 거리가 있으며 비대칭적 권력관계의 기반 위에서 시혜자의 자의적 처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타자의 인격과 인간성에 대한 위협이 잠재된 상태다(최진우 2017).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더 나아가 관용이 타자와 이방인을 관리하는 ‘통치의 기술’임을 지적한다(Brown 2010). 즉, 통치성의 양식으로서의 관용은 관용을 베푸는 자들과 관용을 받는 자들을 분리하고 위계적 지위와 권리를 할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관용은 진정한 의미의 환대가 아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초대(invitation)의 환대’와 ‘방문(visitation)의 환대’를 구분한 바 있다. 전자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까지만 가능한 조건적 환대’에 비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와 거리가 있다(Derrida 2000). 이에 비춰볼 때 관용은 권력을 가진 자의 선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초대의 환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유사 환대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드러낸다(김종훈 2016, 13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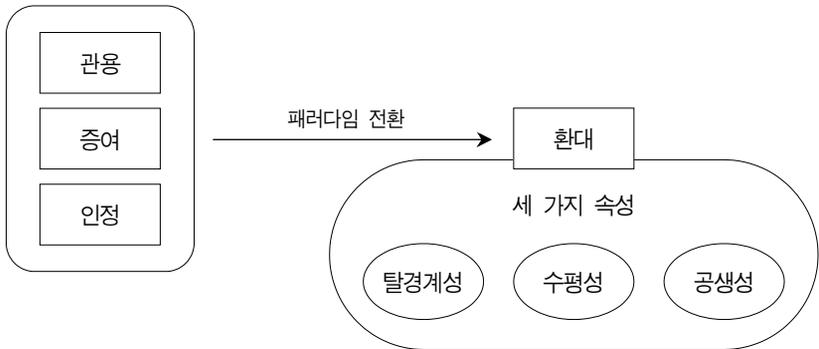
환대는 ‘증여’와도 다르다. 물론 환대는 주려는 마음과 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환대가 증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김현경의 설명은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현경 2016, 190-197). “환대에 대한 논의는 그 어원의 영향으로 쉽게 주인과 손님의 대립 속에 갇히며, 손님의 몫을 주인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문제, 곧 증여의 문제로 귀착되곤 한다”(김현경 2016, 190). 하지만 환대의 개념은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전제로 하여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호의로 환대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가진 자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증여는 증여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답례나 보상 등 역증여의 의무를 수령자에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교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손영창 2016).

환대는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증여와 구분된다. “주는 행위를 증여로 [의미]구성하는 것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해석”인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증여는 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와 그 성격이 다르다(김현경 2016, 195). 이때 재분배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증여의 행위는 주는 행위를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모종의 인정을 기대하는 행위이다. 환대는 나(우리)의 자리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의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것, 즉 나(우리)의 자리나 소유가 나(우리)의 것인 근거를 따져 묻고 그것을 비판적 견지에서 역사화하는 것이다(문성원 2018, 6-7). 더 나아가 환대는 그 자리를 낯선 타자에게 기꺼이 나누거나 주려는 행위로서 타자에게 “주는 힘을 주는 것이며, 받는 사람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김현경 2016, 197).

환대는 다문화주의를 지탱하는 원리로서의 ‘인정(recognition)’ 개념과도 구분된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따르면 인정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기에 온당한 인정은 단순히 예의나 정중함이 아니라 인간의 필수적 요구이다(Taylor 1992). 또한 인정은 타자의 문화와 정체성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타자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관용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타자와 나의 정체성은 별개의 것이고, 서로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방인이나 타자에 대한 인정은 언젠가 도 철회될 수 있다. 즉, 인정을 통한 공존은 ‘타자와의 불안한 동거’에 그

〈그림 1〉 환대의 차별성과 세 가지 속성



출처: 저자 작성

칠 수 있다(최진우 2017). 그렇기에 인정은 타자에 대한 ‘윤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의 소극적 정의를 바탕으로 환대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환대’는 사회적 소수에 대한 시혜적 태도, 위계적 접근, 공존(共存)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관용’, ‘중여’, ‘인정’의 한계를 넘어선 탈경계적·수평적·공생적 태도와 행위를 일컫는다. 관용, 중여, 인정이 타자(그들)와 자아(우리)의 근본적인 분리를 전제로 한다면 환대는 이러한 분리성을 해체적으로 사고하고 특정한 법적 범주나 사회적 표식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에 기초한 관계 맺음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환대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통성의 기반을 확장시킨다. 환대의 관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인 탈경계성, 수평성, 공생성은 각각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 연관성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각각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탈경계성은 이방인 내지는 사회적 소수에 대한 수용성과 개방성을 일컫는다. 즉, 탈경계성은 불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태도(수용성)이자, 진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타인의 목소리나 요청을 경청하려는 태도(개방성)이다. 이것은 타자를 그에게 부과된 법적 범주나 사회적 표식으로 구분하기에 앞서 같은 사람으로 대면하려는 태도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타자를 대할 때 외부에서 부과된 ‘외양(appearances)’에 기망당하지 않고 타자가 처한 ‘구조적 현실(real structures)’을 보려는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Silverstone 2007, 158). 이처럼 탈경계적 태도에 기반한 환대는 타자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가 아닌, 나(우리)의 문제이자 책임으로 끌어오는 것이다(채석진 2017, 36; 문성원 2018). 이런 의미에서의 탈경계성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려는 강박에서도 — 이는 그 극단에서 전체주의적 심성과 맞닿아 있다 — 자유롭다(김현경 2016, 197).

다음으로 수평성은 사회적 소수를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나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수평적 태도는 경계의 안과 밖을 위계적 대립 구도(우-열, 상-하, 정상-비정

상, 보편-특수, 합법-불법, 백인-흑인, 동일자-타자, 문명-야만 등)로 설정하고, 타인을 경계 밖에 위치시킨 채 ‘우리’에게 익숙한 범주로 인식하려는 경향, 즉 타자화의 뒷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점에서 수평적 태도는 사회적 소수의 인격과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비인격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윤리적 태도이다. 그렇기에 수평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주인’과 ‘손님’의 자리 배치에 강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 모두가 이방인성 내지는 타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이 항상 상처받기 쉬운 취약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문수 2014, 6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대는 ‘동질성’을 지양하고 ‘공통성’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생성(conviviality)²⁾은 기꺼이 타인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음으로써 유무형의 상호 이익과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태도이자 적극적으로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³⁾ 이것은 비등가적, 비교환적, 무대가적 관계 맺음의 원리로서 ‘타자’를 상호 권익과 역량을 보완, 증진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함축한다. 실제로 ‘타자’가 늘 수혜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주는 힘”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타자와의 공생적 관계 맺음은 타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대화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간(間)주체성’의 특징을 보인다. 공생성의 이러한 특징은 ‘차이에 대한 인정’에 기반한 공존성과 구분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공생 문화는 역설적이게도 타자의 ‘차이에 대한 무관심’의 에토스에 기반함으로써(김수철 2017, 15), 정치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과 삶의 질을 끌어 올린다.

2) 문화연구와 다문화연구의 맥락에서 ‘공생’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김수철(2017, 14-19)의 설명을 참고할 것.

3)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의 공생성을 환대의 속성으로 제시함으로써 환대 개념이 이기성을 부정하거나 이해관계를 몰각한 태도로 오인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이상원 2018).

III. 기존 문헌 검토

이주민 확대 지수의 지표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기존의 유관 지표체계들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다문화·다양성 측정 지표체계'와 '사회통합 측정 지표체계'의 두 부류로 정리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가 보다 이주민 특정한 지표들을 발굴하기 위해 참고한 기초 자료라고 한다면, 후자는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 이주민 확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1. 다문화·다양성 측정 지표체계

다문화·다양성 측정 지표체계에 관한 기존 문헌은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류정아 외(2015)의 연구는 문화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하에 대분류 차원에서 정책지표, 여건지표, 소수자의 활동지표, 국민의 인식지표를 구분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이주민과 탈북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 집단의 경험과 관점을 활동지표를 통해 반영했다. 안상수 외(2015)의 연구는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를 대분류 차원에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중분류 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로,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나

〈표 1〉

국내 다문화·다양성 측정 지표체계 비교

| 구분 | 영역(1) | 영역(2) | 지표 혹은 측정내용 |
|--------------------------|-------|--------|---|
| 문화다양성 (류정아 외 2015) | 정책지표 | 정책수립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건수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수 |
| | | 정책실행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
| | | 정책예산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
| | 여건지표 | 기반시설여건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 및 시설 수 |
| | | 지원여건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단체 수 |
| | | 지원인력여건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

| | | | |
|-----------------------------|-------------------------|--|---------------------------------------|
| 활동지표 | 참여도 | 월평균 지출액 중 문화예술활동 사용금액 비율 / 일주일 중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시간 / 일주일 중 문화예술 동호회 및 관련단체 참여시간 | |
| | 친밀도 | 소수자가 체감하는 국민 호감 정도 / 문화예술활동 시 국민에게 느끼는 불편함 정도 | |
| | 만족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경험 만족도, 지원정책 및 제도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양적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활동 여건 종합 만족도, 문화예술 시설 / 기관 만족도, 문화예술 시설 / 기관의 접근성 만족도 | |
| | 포용도 | 향유활동 중 느끼는 포용성 정도 | |
| | 평등도 | 향유활동 중 차별당하지 않는 정도 / 향유활동 중 폄하당하지 않는 정도 | |
| | 인식지표 | 친밀도 | 소수자 집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친숙함과 호감 정도 |
| | 수용도 | 소수자 집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 수준 | |
| | 포용도 | 소수자 집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국민의 포용성 정도 | |
| | 평등도 | 소수자 집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국민의 평등성 정도 | |
| 다문화 수용성 (안상수 외 2015) | 다양성 | 문화개방성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 유입·정주 인정 |
| | | 국민정체성 | 국민됨의 자격기준에 대한 다양성 인정 |
| | | 고정관념·차별 |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
| | 관계성 | 일방적 동화 기대 | 이주민의 우리문화 동화 및 순응 기대 |
| | | 거부·회피 정서 | 이주민 접촉상황에서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 |
| | | 교류행동인지 | 이주민과의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 |
| 보편성 | 이중적 평가 | 경제개발 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등급을 둠 | |
| | 세계시민행동인지 |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추구 및 실천의지 | |
| 다민족·다문화 지향성 (황정미 외 2007) | 이주민에 대한 평소 생각 | 이주자들과 맺는 관계의 형태에 관한 생각 /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생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생각 / 평소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 탈북자 등에 대한 인식 | |
| |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 | 외국인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생각 /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 / 이주자의 정착 및 생활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찬반 수준 | |
| | 문화적 다양성·외국과 문화교류에 대한 생각 | 이주자 증대와 문화적 다양성에 관계에 대한 생각 /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관한 생각 | |
|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 평소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정도 / 우리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입장 | |
| | 소수자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생각 | 평소 노숙자나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 종교적 극단주의자, 인종 및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진 자, 동성애자의 공개 집회 허용에 대한 입장 | |

회피 정서, 교류행동의지로,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행동의지로 구성된다. 황정미 외(2007)의 연구는 다민족·다문화지향성 측정을 목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평소 생각,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 문화적 다양성·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생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소수자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생각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세부 지표들을 배치하고 있다.

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민통합정책지수(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는 영국문화원과 이주정책그룹(Migration Policy Group)이 공동 개발한 지수로 노동시장, 가족재결합, 교육, 정치 참여, 장기 거주, 국적, 반-차별의 총 7개 영역에 걸쳐 이주민 통합 수준을 평가한다(최근에는 '건강' 영역이 추가되어 총 8개 영역을 측정한다). MIPEX는 정책 집행과 미등록 이주민 통합의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Chun and Yoon 2013, 23-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 동등 대우의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주민 처우와 관련된 법제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상호문화도시 지수(ICC: Intercultural City Index)는 이주민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가운데, 새로운 이민통합의 접근법으로 등장한 인터컬츄럴시티 프로그램”(케이조 2017, 1)과 관련된 지수이다. ICC는 도시나 지자체를 분석 단위로 하며 지표체계 구성에 있어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 간의 교류와 그 여건을 중시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총 14개 영역으로 구성된 ICC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제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의 ‘난민 환대 지수(Refugees Welcoming Index)’는 정부의 난민 지원에 대한 인식과 난민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된다. 난민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태도, 인식, 이미지, 그리고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그 사회의 환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ILGA-유럽 무지개 지수(ILGA-Europe Rainbow Index)’는 평등·반차별, 가족, 편견발언·폭력, 법적 젠더 인정,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난민

〈표 2〉

해외 다문화·다양성 측정 지표체계 비교

| 구분 | 영역(1) | 영역(2) | 지표 혹은 측정내용 |
|---------------------|----------|---|------------------|
| MIPEX ⁴⁾ | 노동시장 접근성 | 접근성 |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접근도 |
| | | 일반지원 | 교육 및 능력의 수용도 등 |
| | | 계획지원 | 정부의 계획적 지원 |
| | | 노동권리 |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평등성 |
| | 가족 재결합 | 자격조건 | 가족 재결합의 자격 정도 |
| | | 획득조건 | 가족 재결합의 획득 정도 |
| | | 신분보장 | 정부의 가족 재결합 보장 정도 |
| | | 가족권리 | 재결합한 가족의 권리 정도 |
| | 교육 | 접근성 |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도 |
| | | 이주민요구 | 학생을 위한 교육체계 |
| | | 새로운기회 | 소수민족 언어 및 문화교육 |
| | | 이문화교육 | 국민 전체 대상의 이문화교육 |
| | 참정권 | 피선거권 | 이주민의 선거권 여부 |
| | | 정치자유 | 이주민의 정치적 자유도 |
| | | 자문기구 | 정부 자문기구 활용 가능 정도 |
| | | 정치활동 | 국가적 차원의 지원 내용 |
| | 장기체류 | 자격조건 | 장기체류허가의 자격 정도 |
| | | 획득조건 | 장기체류허가의 획득 조건 |
| | | 체류보장 | 체류허가의 소요 시간 및 보장 |
| | | 관련권리 | 국적자와 동등권리 부합 정도 |
| | 국적취득 | 자격조건 | 국적취득의 자격 정도 |
| | | 획득조건 | 국적취득의 획득 조건 |
| | | 취득보장 | 취득의 소요시간 및 보장 정도 |
| | | 이중국적 | 이중국적허용 여부 |
| | 차별금지 | 인식체계 | 차별금지의 정의 및 개념 |
| | | 적용범위 | 차별금지 적용 범위 |
| | | 차별금지 | 집행기구 범위 |
| | | 평등정책 | 국가의 평등정책 정도 |
| 상호 문화도시 (ICC Index) | 시의회 몰입도 | 공식 성명 채택 / 전략 채택 / 행동 계획과 예산 배분 / 정치인 등의 주요 연설 / 전용 홈페이지 운용 / 전담 기구 / 정책 영향 평가 절차 / 우수 지역인 포상 | |
| | 교육시스템 | 학생기구의 종족 구성 / 교사기구의 종족 구성 / 이주민과 그 부모의 학교 생활 관여도 / 상호문화 교육 프로젝트 / 학교 내 혼종 구성 증진 정책 | |

4) 김중관(2013, 168)의 표를 반영한 것임.

상호
문화도시
(ICC Index)

| | |
|--------------|---|
| 지역사회 | 다수가 같은 종족 출신인 마을의 비율 / 특정 종족 집단이 거주민의 50% 이하인 마을의 비율 / 마을의 다양성 증진 정책 / 종족 간 교류 촉진 정책 |
| 공공 서비스 | 종족 구성을 고려한 행정의 대표성 수준 /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정책 / 사적 고용영역에서의 상호문화적 혼합 촉진 행동 / 특정 문화적 수요의 수용성 |
| 기업과 노동시장 | 고용에서 다양성과 반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우산조직 / 작업장 내 반차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 / 시 차원에서의 사 영역 노동시장 내 상호문화적 결합 촉진 행동 / 종족, 문화 소수집단의 주류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시 차원에서의 행동 / 시 차원에서의 이질적 문화들의 혼종을 돕는 '기업 지구' 만들기 독려 / 다양성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의회의 노력 |
| 문화 | 상호문화주의를 단체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여부와 그 비율 / 문화적 결합을 촉진하는 문화 이벤트 독려 / 다양성 이슈를 다루는 문화 제작을 독려 / 다양성 이슈에 관한 토론 및 캠페인의 조직화 |
| 공적 공간 | 공공 광장이나 시장 등에서 상호문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시의회의 행동 / 신규 공공 건물이나 공간의 설계와 운용, 혹은 시설 개발업체에 부과하는 개발 조건에 시민들의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인지 / 시내 지역의 미래 계획에 관해 시민들과 공식적으로 협의할 때 시의회가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협의 절차를 조정 / 타인에게 적대적이거나 위험지역으로 간주되는, 종족적으로 격리된 지역의 존재 |
| 중재·갈등해결 | 상호문화적 소통 내지는 문화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유무 / 종교들 간의 이슈를 다루는 기관의 유무 / 문화적 중재 기능 |
| 언어 | 공식 언어와 소수 언어로 언어 훈련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유형 / 소수 언어 미디어 지원 / 소수 언어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이벤트 사업 지원 |
| 지역 미디어와의 관계 | 이주민과 소수집단에 대한 균형잡힌 미디어 태도를 유지하는 시의 미디어 전략 / 조화로운 상호문화적 관계 촉진을 뚜렷한 목표로 한 시의 정보 서비스 / 소수 종족 집단 출신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개발과 훈련 지원 체계 / 다양성 이슈에 관한 미디어 감시 |
| 개방성·국제성 | 국제 무역 및 협력 촉진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 국제적 커넥션에 대한 시의 개방성을 감시하고 증진시키는 책임을 진 기구의 존재 / 외국인 투자, 사업, 노동자, 학생 유치 및 이들의 시민적 삶에 대한 참여 촉진에 관한 뚜렷한 시의 전략 / 외국인 거주민과 모국의 경제 관계 촉진 정책 |
| 상호문화적 지식과 역량 | 다양성과 상호문화적 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전담 기관의 존재 / 시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데이터와 지식을 시의회의 정책 형성과 연계시키는 공식적인 절차 / 시의 행정에서 상호문화적 역량의 촉진 |

| | | |
|---------------------------------|----------------|--|
| | 신규 주민 확대 | 신규 주민을 확대하는 전담 기관의 존재 / 신규 외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보 및 지원 패키지 / 시 기관과 당국의 확대 지원 / 공식적인 환영 이벤트 |
| | 거버넌스, 리더십, 시민권 | 외국인 거주민의 투표권 / 시민들의 구성에 비추어 본 선출 공무원의 종족적 배경 / 종족적 소수 집단들을 대표하면서 지역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우산 조직 / 학교 이사회와 공공 서비스 영역 내 이주민 대표를 위한 기준 마련 |
| 난민 확대 (국제앰네스티 2016) | - | 사람들이 전쟁과 박해로부터 피신하여 타국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 / 정부가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 |
| | - | 전쟁이나 박해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용도(집, 이웃, 마을, 도시, 국가) |
| ILGA-Europe Rainbow Index | 평등과 반차별 | 헌법, 고용, 재화 및 서비스, 여타 삶의 영역, 평등 행동계획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고려 / 관련 법률에서 젠더 표현과 간성(intersex)을 고려 |
| | 가족 | 결혼 평등, 등록된 파트너십과 결혼하에서의 권리 유사성(제한성) / 기타 |
| | 편견 발언 / 폭력 | 증오 범죄법, 증오 연설법, 증오 대처 정책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고려 / 관련 법률에서 간성을 고려 |
| | 법적 젠더 인정 | 관련 절차의 존재 / 개명 / 젠더 정체성을 고려한 공문서상의 젠더 교체 / 정신의학 진단 시 '젠더 정체성 혼란'의 진단을 하지 않기 / 의료, 외과 수술 등의 간섭을 의무 요구사항으로 하지 않음 / 기타 |
|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 공개 행사 개최 시 국가의 방해가 없음 / 결사 활동에 관한 국가 간섭 없음 / 국가나 지역 단위 모두에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두지 않음 |
| | 난민 |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고려함 |

의 여섯 가지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2. 사회통합 측정 지표체계

사회통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대체로 노동시장, 교육 제도, 시민사회 등 공적영역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다문화 사회에서의 종족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괄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의 기저에는 소득과 고용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내

지는 격차 구조, 그리고 이민자 증대에 따른 문화적·종족적 다양성 심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분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놓여 있다. 사회통합 수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회적 분열 정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회적 갈등과 적대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소수에 대한 환대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사회통합과 환대의 두 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⁵⁾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측정은 크게 ‘사회 구조적 요건’과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두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정해식 외 2017, 374). 대체로 전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이라면 후자와 관련된 지표들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노대명 외(2009)의 연구는 <표 3>에서 보듯이 물적 조건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와 비교할 때 강신욱 외(2012), 조병구 외(2015), 이재열 외(2014)의 연구는 사회적 결속력, 관용, 신뢰, 사회적 참여 등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행태의 차원을 함께 고려했다. 강신욱 외(2012)의 연구는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을, 조병구 외(2015)의 연구는 사회 자본, 사회포용, 제도기반을 사회통합 측정의 주요 영역들로 구분하였다. 이재열 외(2014)의 연구는 사회적 통합 역량에 비해 잠재적 갈등소지가 얼마나 큰지를 기준으로 해당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자 했다.

한편 장용석 외(2011)의 연구는 갈등사회 내지는 위험사회 개념에 대비되는 대안적인 사회모습을 내포한 ‘통합사회’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된 공동체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이다. 이들은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 보호, 공동체 건설, 국제사회 기여의

5) 통합 개념은 ‘동화’를 연상시키는 단어로 인식되기도 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주민 통합 접근으로 채택되어 온 ‘통합’의 접근은 이주민의 개인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이주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국민정체성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동화주의였다(박단 2007; 홍태영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합 개념을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열 양상에 대하여 공생의 지향을 함축한 것으로 간주했음을 밝혀둔다.

| 구분 | 영역 | | 지표 |
|-----------------|----------------|--------------|---|
| 노대명 외 (2009) | 소득 | | 빈곤율, 소득불평등, 근로빈곤율 |
| | 고용 | | 실업률, 비정규비율, 성별 임금격차, 파업률 |
| | 금융 | | 소비자물가, 이자율, 저축률 |
| | 건강 | | 유아사망률, 기대수명(여성, 남성), 1,000명당 침상 수, 의료비 지출 비율 |
| | 주택자산 | | 주거비 비중, 주택가격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 |
| | 가족 | | 평균 가구원 수, 여성취업률, 자살률, 이혼율, 결혼율, 출생률, 진학률 |
| 장용석 외 (2011) | 개인 보호 | 자유와 민주 |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Index of Economic Freedom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of the Press |
| | | 안전과 보호 | 경제적 안전 사회적 보호 사회 보장 실업률 범죄율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
| | 공동체 건설 | 다양성과 관용 | 양성평등 장애인 배려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 비율 성격차 지수 장애인 관련 법률 세계가치관조사 관용지수 WDI(World Bank) 자료 |
| | | 신뢰와 참여 | 일반인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 참여정도 세계가치관조사 일반인 신뢰문항 세계가치관조사 기관신뢰 문항 세계가치관조사 단체참여 문항 |
| | 국제 사회 기여 | 국제사회 참여 | 국제정부기구 참여 가입되어 있는 국제정부기구 수 |
| | | 국제협력 | 공적개발원조 평화유지활동 GNI 대비 ODA 공여액 평화유지활동 기여(물적/인적) |
| 강신욱 외 (2012) | 상태 | 사회적 결속력 | 사회에 대한 소속감, 타인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생활만족도, 사회적 참여 |
| | 조건 | 사회적 안정성 | 1인당 GDP, 인구증가율, 기대수명, 부양인구비 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수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
| | | 사회적 형평성 | 빈곤율, 소득불평등,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의 정도, GDP 대비 공적의료비 지출 비중,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
| 조병구 외 (2015) | 사회포용 | 기회균등 (형평) | 남녀 고용격차, 남녀 임금격차, 공교육지출 비율, 지니계수, 중고등 취학률, 노인부양비, 노인부양부담 정도,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이동 통신 가입자 비율 |
| | | 안전 | 실업률, 임시직근로자 비율, 도로사망률, 범죄율, 자살률, 주관적 안전감 |

| | | | |
|-----------------|----------------------|--|---------------------------------|
| | 사회자본 | 관용 | 타인에 대한 관용, 다문화에 대한 관용 |
| | |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기관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
| | | 참여 | 사회참여, 정치참여, 기부 |
| | 제도기반 | 자유 |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 자유 |
| | | 법질서 | 법치지수, 부패인식지수 |
| | | 정부 역량 | 정부효과성, 관료시스템의 질적 수준 |
| 사회복지 | | 공적연금지출 비중, 복지지출액 비중 | |
| | 글로벌기여 | 글로벌 공공재 기여, ODA 비율,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 |
| 이재열 외 (2014) | 잠재적 갈등소지 (양극화) | 경제 | 지니계수 |
| | | 사회 | 불신비율 |
| | | 가치 | 비혼합형 비율 (잉글하트의 물질주의 / 탈물질주의 척도) |
| | 사회적 통합 역량 | 체계 | 공공교육지출, 고등교육이수율, 공적사회지출 |
| | | 생활세계 | 언론자유, 여성불평등지수, 투표율, 민주주의 |
| | | 규범 | 제도투명성 |
| 정해식 외 (2017) | 사회적 포용 | 상대빈곤율, 성별격차,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 |
| | 사회적 자본 | 시민의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 신뢰 | |
| | 사회이동 |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심분위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탈락률 | |
| | 사회갈등과 관리 |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 / 정규직 급여격차, 노동소득분배율 | |

출처: 정해식 외(2017, 376, 387); 장용석 외(2011, 15)

대분류하에 지표체계를 구성했다. 통합사회 지표체계는 기존의 사회통합 논의와 비교할 때 사회구성원 다양성과 관용성 등을 주된 측정영역에 반영하는 등 다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했다.⁶⁾ 마지막으로 정해식 외(2017)의 연구는 사회통합 수준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6) 장용석 외(2011, 10)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주된 측정 영역은 경제, 복지, 교육, 건강 수준 등에 한정되었는데, 이는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경제적 격차의 심화, 복지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경향은 사회통합이 “개념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다원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리는 네 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통합 지표체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물적 조건과 관련된 지표들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지표들은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를 구성할 때 물적 여건과 인식을 반영한 지표들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IV.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

환대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유관 지표체계들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를 구성하면 <표 4>와 같다. 지표

|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 | | |
|-----------------|-----------------|--|
| 대분류 | 소분류 | 지표 |
| 권리 (33%) | 인권 법제화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JP Rule of Law Index 기본권 항목(50%) • 18개 국제 인권 조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50%) |
| | 이주민 권리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통합정책지수(MIPEX)(50%) • 난민 인정률(50%) |
| 소통·문화 (33%) | 공론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자유지수(FH, RWB)(33%) • 세계가치관조사(WWS) 생활공동체 문항(33%) • 부패인식지수(CPI)(33%) |
| | 가치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가치관조사(WWS) 개방도 문항(50%) • 세계기부지수(WGI)(50%) |
| 사회경제 (33%) | 안전·보호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빈곤율(33%) • 고용보호지수(임시고용)(33%) • 자살률(33%) |
| | 격차·복지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33%) • 성불평등지수(33%) •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33%) |

출처: 저자 작성(지표 자료의 출처는 부록으로 제시)

7) 물론 영역과 속성 간의 조응 관계가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각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을 해당 속성과 연관시켰음을 밝혀둔다.

체계는 크게 권리, 소통·문화, 사회경제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를 앞서 제시한 환대의 개념 구조와 연관시켜 본다면 권리는 수평성과, 소통·문화는 탈경계성과, 사회경제는 공생성과 조응한다.⁶⁾ 개별 영역의 논리와 선정된 지표들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개별 지표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는 부록을 참고).

1. 권리

‘권리’ 영역은 환대의 세 가지 속성들 중에서 수평성에 조응한다. 이주민 환대에서 수평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인종, 종족, 국적, 언어, 성 등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넘어서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받기 쉬운 취약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처럼 수평성에 기반한 이주민 환대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주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이주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재의 안정 기반인 ‘자리’⁸⁾와 이 자리에 결부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부여해야 한다(김현경 2016, 207). 결국 이주민의 권리 보장 수준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법제도들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정도, 즉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친화성 수준과도 직결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권리’ 영역을 이주민 환대 지수의 주요 측정 영역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권리 영역은 다시 ‘인권 법제화’와 ‘이주민 권리’의 두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전자는 한 사회의 법제도가 갖는 전반적인 인권 친화성 수준, 그리고 국제인권규범 수용도로 측정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보다 이주민에 특화된 지표들에 주목한다. ‘인권 법제화’ 영역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8) ‘자리/장소(place)’는 환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다. 자리/장소는 특정한 지점이나 공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속한 곳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점유할 수 있는 위상 등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며,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현경(2016, 281-287)의 설명을 참고하시오.

Justice Project)의 법치 지수(Rule of Law Index) 가운데 기본권 항목, 그리고 18개 국제 인권 조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현황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국제 인권 조약에는 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도 포함된다. ‘이주민 권리’ 영역은 이주민통합정책지수(MIPEX)와 난민 인정률을 활용해 측정한다. MIPEX의 경우 이전 절에서 설명했듯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동등대우를 중시하고 이주민 처우 관련 법제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주민 환대 지수의 측정 지표로 선정했다.

2. 소통·문화

‘소통·문화’는 환대 개념의 속성들 가운데 탈경계성에 조응하는 영역이다. 이주민 환대에서 탈경계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대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부과된 법적 범주나 사회 표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꺼이 수용, 경청하려는 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주민이 ‘타자’로서 처한 구조적 현실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다. ‘소통·문화’는 이러한 탈경계성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제도적 토대이다. 즉, 이주민 환대는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의 자유로운 표출, 공적 토론 문화의 발달 수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접촉과 신뢰 수준, 이질적 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수준 등 소통·문화의 측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소통·문화 영역을 이주민 환대 지수 지표체계의 또 다른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다시 ‘공론’과 ‘가치’의 두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다.

먼저 ‘공론’ 영역은 한 사회가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들의 관점과 견해에 대한 왜곡이나 오인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다(Silverstone 2002; 2007). 이는 다시 미디어, 생활공동체, 부패의 세 차원으로 나뉜다. 미디어는 타자와의 조우가 직접적인 면대면보다는 매개화(mediat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한 세부 영역이다(채석진

2017, 8). 본 연구는 미디어 환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프리덤하우스’와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⁹⁾

‘생활공동체’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영역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참여의 활성화 수준이 지역 공동체의 소통 기반을 기능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관련된 문항들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부패’의 경우, 이주민 환대의 기반인 공공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측정 항목으로 선정했다. 공적 권력이 사적 이해나 특권 세력에 침윤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패는 정책과 행정 영역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의 권익에 관한 담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정책 논의 과정에서 부패가 끼어들게 되면 이주민의 권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표 체계가 왜곡된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지표로 활용했다.

소통·문화 영역의 또 다른 하위 영역인 ‘가치’는 다시 ‘개방도’와 ‘기부도’의 두 차원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두 차원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개방도 관련 문항들(이웃으로서의 수용도 관련 문항들)에 관한 측정 결과와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의 측정 결과를 활용해 측정했다. 전자는 인식과 태도를, 후자는 행위와 실천을 보다 잘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3. 사회경제

‘사회경제’는 환대 개념의 세 가지 속성 중 공생성에 조응하는 영역이다. 이주민 환대에 있어서 공생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타자’를 상호 권익

9) 두 지수가 조사방법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합산 평균하였음을 밝혀둔다. 각 지수의 조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태홍 외(2013, 23-25)의 설명을 참고하시오.

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태도와 행위로써 정치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 제고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사회경제'는 바로 이러한 공생성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을 일컫는다. 물론 이주민에 대한 공포, 적대, 혐오, 차별은 문화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이를테면 소득, 노동, 복지 등 사회경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내지는 격차 수준이 이들에 대한 낙인, 확증편향, 적대나 혐오의 정서를 유지,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공생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랜돌 헨슨(Randall Hansen)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실업 격차를 예시하면서 유럽 다문화사회가 처한 보다 본질적인 위기를 문화가 아닌 경제에서 찾기도 했다(Hansen 2012). 이처럼 이주민 환대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문화적 요인 외에도 물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회경제 영역을 환대 지수 지표체계의 세 번째 주요 영역으로 설정했다.

사회경제 영역은 다시 '안전·보호', '격차·복지'의 두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안전·보호'는 상대적 빈곤율, 고용보호지수(임시고용), 자살률의 세 지표들을 활용해 측정한다. '격차·복지'는 세대, 소득, 교육, 기업 규모, 일자리, 직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격차 현상과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영역이다. 비쿠 파레크(Bhikhu Parekh)에 의하면 사회적 결속력이 약한 사회일수록 이방인에 대한 환대 수준이 저하되는데(Wood and Landry 2008, 268), 불평등 내지는 격차는 사회적 결속력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니계수와 성불평등지수를 격차를 반영하는 지표들로 활용했다.¹⁰⁾ 이 가운데 성불평등지수는 '이주의 여성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주민 환대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¹¹⁾ 마지막으로 환대 개념이 자원의 재분배를 포

10) OECD는 회원국들의 내국출생자와 외국출생자 간 실업률 격차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 지표로 활용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11)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와 탈북민의 경우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혼이

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국가가 수행하는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을 사회경제 영역의 세부 측정 지표로 활용했다.

V. 이주민 환대 수준 측정 및 결과 분석

1. 이주민 환대 지수 산출 방식

이주민 환대 지수와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표들이 갖는 다양한 변량을 통제해야 한다. 즉, 지표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표준화 방식은 제트스코어(Z-score) 방식, 최소-최대 정규화 방식, 선형 정규화 방식, 지표별 순위 합산 방식, 조사된 가장 큰 값을 100점으로 설정해 각각의 상대값을 추출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최소-최대 정규화 방식’을 채택해 각 지표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켰으며, 지표가 해당 영역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여 지표값을 표준화하였다.

〈표 5〉

지표 표준화 방식

| 구분 | 수식 |
|-----|---|
| 순기능 | $(\text{Value} - \text{Min}) / (\text{Max} - \text{Min})$ |
| 역기능 | $(\text{Max} - \text{Value}) / (\text{Max} - \text{Min})$ |

Max = global Max + (global Max * 10%), Min = global Min - (global Min * 10%)
 global Max → 해당 지표 중 최댓값
 global Min → 해당 지표 중 최솟값

출처: 장용석 외(2011, 18)와 정해식 외(2017, 391)의 방식을 차용

민자(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여성이 83.8%(130,227명)를 차지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탈북민의 경우 2017년 9월 기준으로 여성이 71%(22,13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성, 2017, “10명 중 8명이 여성 … 두드러지는 탈북민 여초 현상,” 『한국일보』(10월 15일), <http://www.hankookilbo.com/v/d88724e1071c4a00896b6b391eadba13>(최종검색일: 2018/02/05).

위 방식에 따를 때 1이 반드시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접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방식은 특정 국가가 극단적으로 높은 값을 가질 경우 다른 조사 대상 국가들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정해식 외 2016,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최소 정규화 방식은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하위 영역 내에서 지표 변량을 정규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채택했다.

다음으로 표준화된 지표값들을 합산하기 위해서 동일가중치 방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지표연구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박명호 2012, 101). 다만, 동일가중치 부여 방식은 한 영역이나 차원에 다수의 변수가 속할 경우 통합 지수의 구조를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정해식 외 2016, 22).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표체계 구성에서 영역별로 배정된 지표들 수의 균형을 고려하였다.¹²⁾

결측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먼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핵심 지표 내지는 많은 지표가 결측인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조사 국가들 가운데 조사연도의 지표가 결측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과거 연도의 지표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특정 지표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국가의 경우 유관 분야에서 발전 경향이 비슷한 국가의 값에 준하여 지표 값을 채웠다.

2. 측정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이상의 산출 과정을 바탕으로 23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환대 지수를 측정했다. 이하에서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 지역 간 비교, 그리고 한국의 위상의 순서로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12)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가중치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환대’ 개념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낯선 개념이기에 단기간에 그 시행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1) 국가 간 비교

가중치를 균등 배분하여 2012년과 2017년의 이주민 환대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주민 환대 지수 평균값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2012년 0.550, 2017년 0.554), 노르웨이가 두 해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제외한 전통적 이민국

<표 6>

2012년과 2017년 이주민 환대 지수 비교

| 구분 | 2017년 | | 2012년 | |
|-------|-------|------|-------|------|
| | 동일가중치 | | 동일가중치 | |
| 노르웨이 | 0.711 | (01) | 0.689 | (01) |
| 네덜란드 | 0.707 | (02) | 0.649 | (06) |
| 스웨덴 | 0.688 | (03) | 0.678 | (02) |
| 뉴질랜드 | 0.680 | (04) | 0.675 | (03) |
| 핀란드 | 0.678 | (05) | 0.648 | (07) |
| 캐나다 | 0.673 | (06) | 0.667 | (04) |
| 독일 | 0.652 | (07) | 0.608 | (09) |
| 호주 | 0.637 | (08) | 0.664 | (05) |
| 스위스 | 0.636 | (09) | 0.588 | (11) |
| 영국 | 0.626 | (10) | 0.628 | (08) |
| 프랑스 | 0.589 | (11) | 0.583 | (12) |
| 스페인 | 0.567 | (12) | 0.597 | (10) |
| 슬로베니아 | 0.552 | (13) | 0.562 | (13) |
| 이탈리아 | 0.541 | (14) | 0.531 | (14) |
| 미국 | 0.527 | (15) | 0.515 | (15) |
| 칠레 | 0.517 | (16) | 0.453 | (18) |
| 폴란드 | 0.476 | (17) | 0.487 | (16) |
| 에스토니아 | 0.451 | (18) | 0.454 | (17) |
| 헝가리 | 0.401 | (19) | 0.441 | (19) |
| 일본 | 0.396 | (20) | 0.419 | (20) |
| 한국 | 0.385 | (21) | 0.414 | (21) |
| 멕시코 | 0.342 | (22) | 0.339 | (23) |
| 터키 | 0.310 | (23) | 0.372 | (22) |
| 평균 | 0.554 | | 0.550 | |

들이 상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동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터키, 멕시코와 더불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순위 변동 수준은 대체로 제한적이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순위 변동을 보였다(네덜란드 6위 → 2위). 한국은 두 해 모두 2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전체 평균값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2012년 0.136 → 2017년 0.169).

〈표 7〉

2017 이주민 환대 지수 영역별 측정 결과 비교

괄호 안 숫자는 순위임

| 구분 | 총합 | 인권 | | | 문화 | | | 사회경제 | | |
|-------|------------|------------|------------|------------|------------|------------|------------|------------|------------|------------|
| | | 법제화 | 이주민 권리 | 권리 | 공론 | 가치 | 소통·문화 | 안전·보호 | 격차·복지 | 사회경제 |
| 노르웨이 | 0,711 (01) | 0,713 (09) | 0,578 (04) | 0,645 (07) | 0,741 (05) | 0,796 (06) | 0,768 (03) | 0,692 (01) | 0,747 (08) | 0,720 (02) |
| 네덜란드 | 0,707 (02) | 0,727 (07) | 0,751 (01) | 0,739 (01) | 0,650 (09) | 0,758 (07) | 0,704 (09) | 0,565 (05) | 0,795 (05) | 0,680 (04) |
| 스웨덴 | 0,688 (03) | 0,741 (05) | 0,560 (07) | 0,650 (06) | 0,748 (03) | 0,750 (08) | 0,749 (05) | 0,512 (09) | 0,817 (01) | 0,665 (05) |
| 뉴질랜드 | 0,680 (04) | 0,699 (11) | 0,662 (03) | 0,680 (04) | 0,804 (01) | 0,914 (01) | 0,859 (01) | 0,469 (16) | 0,531 (20) | 0,500 (15) |
| 핀란드 | 0,678 (05) | 0,840 (01) | 0,469 (11) | 0,654 (05) | 0,702 (06) | 0,637 (12) | 0,670 (10) | 0,603 (04) | 0,816 (02) | 0,710 (03) |
| 캐나다 | 0,673 (06) | 0,628 (16) | 0,741 (02) | 0,685 (02) | 0,759 (02) | 0,895 (02) | 0,827 (02) | 0,356 (20) | 0,657 (12) | 0,507 (14) |
| 독일 | 0,652 (07) | 0,790 (02) | 0,573 (05) | 0,682 (03) | 0,606 (11) | 0,634 (13) | 0,620 (11) | 0,532 (07) | 0,778 (06) | 0,655 (06) |
| 호주 | 0,637 (08) | 0,691 (12) | 0,572 (06) | 0,632 (08) | 0,671 (08) | 0,860 (03) | 0,765 (04) | 0,417 (18) | 0,611 (15) | 0,514 (13) |
| 스위스 | 0,636 (09) | 0,713 (10) | 0,361 (14) | 0,537 (13) | 0,745 (04) | 0,727 (09) | 0,736 (08) | 0,512 (10) | 0,760 (07) | 0,636 (08) |
| 영국 | 0,626 (10) | 0,656 (14) | 0,476 (10) | 0,566 (11) | 0,673 (07) | 0,808 (05) | 0,741 (07) | 0,507 (11) | 0,635 (13) | 0,571 (11) |
| 프랑스 | 0,589 (11) | 0,755 (04) | 0,365 (12) | 0,560 (12) | 0,544 (12) | 0,365 (19) | 0,455 (17) | 0,690 (02) | 0,815 (03) | 0,752 (01) |
| 스페인 | 0,567 (12) | 0,769 (03) | 0,364 (13) | 0,566 (10) | 0,419 (18) | 0,648 (11) | 0,534 (14) | 0,516 (08) | 0,686 (11) | 0,601 (10) |
| 슬로베니아 | 0,552 (13) | 0,663 (13) | 0,257 (17) | 0,460 (15) | 0,494 (15) | 0,598 (14) | 0,546 (13) | 0,501 (12) | 0,800 (04) | 0,650 (07) |
| 이탈리아 | 0,541 (14) | 0,733 (06) | 0,321 (15) | 0,527 (14) | 0,392 (20) | 0,544 (16) | 0,468 (16) | 0,535 (06) | 0,723 (09) | 0,629 (09) |
| 미국 | 0,527 (15) | 0,332 (23) | 0,508 (09) | 0,420 (17) | 0,646 (10) | 0,840 (04) | 0,743 (06) | 0,261 (23) | 0,575 (17) | 0,418 (21) |
| 칠레 | 0,517 (16) | 0,719 (08) | 0,539 (08) | 0,629 (09) | 0,499 (14) | 0,672 (10) | 0,585 (12) | 0,492 (13) | 0,182 (22) | 0,337 (22) |
| 폴란드 | 0,476 (17) | 0,607 (17) | 0,165 (23) | 0,386 (18) | 0,427 (17) | 0,566 (15) | 0,497 (15) | 0,487 (14) | 0,606 (16) | 0,546 (12) |
| 에스토니아 | 0,451 (18) | 0,649 (15) | 0,256 (18) | 0,452 (16) | 0,528 (13) | 0,329 (20) | 0,428 (18) | 0,411 (19) | 0,531 (19) | 0,471 (18) |
| 헝가리 | 0,401 (19) | 0,557 (18) | 0,178 (21) | 0,367 (21) | 0,302 (21) | 0,408 (18) | 0,355 (21) | 0,427 (17) | 0,534 (18) | 0,480 (17) |
| 일본 | 0,396 (20) | 0,508 (20) | 0,172 (22) | 0,340 (23) | 0,472 (16) | 0,260 (22) | 0,366 (19) | 0,273 (22) | 0,690 (10) | 0,481 (16) |
| 한국 | 0,385 (21) | 0,508 (21) | 0,248 (19) | 0,378 (19) | 0,394 (19) | 0,263 (21) | 0,329 (22) | 0,285 (21) | 0,612 (14) | 0,449 (20) |
| 멕시코 | 0,342 (22) | 0,549 (19) | 0,201 (20) | 0,375 (20) | 0,266 (22) | 0,465 (17) | 0,365 (20) | 0,472 (15) | 0,097 (23) | 0,284 (23) |
| 터키 | 0,310 (23) | 0,429 (22) | 0,292 (16) | 0,361 (22) | 0,110 (23) | 0,117 (23) | 0,113 (23) | 0,675 (03) | 0,237 (21) | 0,456 (19) |
| 평균 | 0,554 | 0,651 | 0,418 | 0,534 | 0,547 | 0,602 | 0,575 | 0,487 | 0,619 | 0,553 |

각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7년 기준으로 권리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네덜란드였다(〈표 7〉 참조). 권리 영역의 하위 영역을 보면 우선 '이주민 권리' 부문에서는 네덜란드가, 인권 법제화 부문에서는 핀란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소통·문화 영역에서는 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론과 가치의 두 하위 영역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가치 영역에서는 0.914로 가장 높은 지표값을 획득하였다.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프랑스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사회경제의 하위 영역들 가운데 안전·보호 부문에서는 노르웨이가, 격차·복지 부문에서는 스웨덴이 각각 최고점을 획득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2) 지역 간 비교

전통이민국, 북유럽, 동북아시아의 세 지역 간에 나타나는 이주민 확대 양상의 차이는 〈표 8〉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17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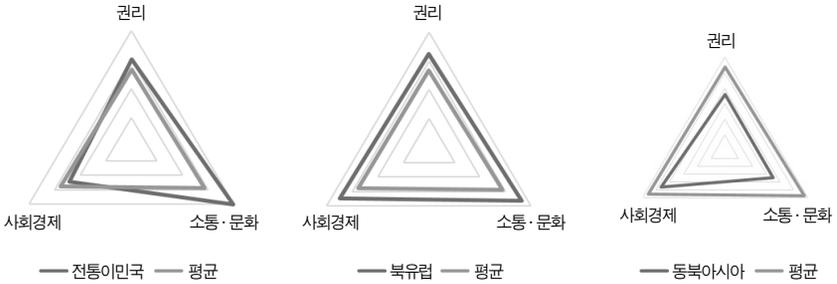
〈표 8〉

전통이민국, 북유럽,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비교

| 구분 | | 2017년 (동일가중치) | | | | 2012년 (동일가중치) | | | |
|-------|------|---------------|-------|-------|-------|---------------|-------|-------|-------|
| | | 권리 | 소통·문화 | 사회경제 | 종합 | 권리 | 소통·문화 | 사회경제 | 종합 |
| 전통이민국 | 호주 | 0.632 | 0.765 | 0.514 | 0.637 | 0.641 | 0.786 | 0.566 | 0.664 |
| | 캐나다 | 0.685 | 0.827 | 0.507 | 0.673 | 0.578 | 0.847 | 0.576 | 0.667 |
| | 미국 | 0.420 | 0.743 | 0.418 | 0.527 | 0.375 | 0.741 | 0.430 | 0.515 |
| | 뉴질랜드 | 0.680 | 0.859 | 0.500 | 0.680 | 0.610 | 0.854 | 0.560 | 0.675 |
| | 평균 | 0.604 | 0.799 | 0.485 | 0.629 | 0.551 | 0.807 | 0.533 | 0.630 |
| 북유럽 | 핀란드 | 0.654 | 0.670 | 0.710 | 0.678 | 0.552 | 0.700 | 0.691 | 0.648 |
| | 스웨덴 | 0.650 | 0.749 | 0.665 | 0.688 | 0.639 | 0.732 | 0.662 | 0.678 |
| | 노르웨이 | 0.645 | 0.768 | 0.720 | 0.711 | 0.565 | 0.748 | 0.755 | 0.689 |
| | 평균 | 0.650 | 0.729 | 0.698 | 0.692 | 0.585 | 0.727 | 0.703 | 0.672 |
| 동북아시아 | 일본 | 0.340 | 0.366 | 0.481 | 0.396 | 0.315 | 0.417 | 0.524 | 0.419 |
| | 한국 | 0.378 | 0.329 | 0.449 | 0.385 | 0.415 | 0.394 | 0.433 | 0.414 |
| | 평균 | 0.359 | 0.347 | 0.465 | 0.391 | 0.365 | 0.406 | 0.479 | 0.416 |

〈그림 2〉

각 지역별 세 영역에서의 전체 평균과의 비교(2017년)¹³⁾



준으로 지역별 이주민 환대 지수의 평균값을 보면 전통이민국들(0.629)이 북유럽 국가들(0.692)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고, 동아시아 국가들(0.391)은 전체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우선 세 지역 모두에서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사회경제 영역에서 다소간의 하강세가 나타났다. 권리 영역에서는 전통이민국과 북유럽에서는 상승세가, 소통·문화 영역에서는 전통이민국과 동북아시아에서 하강세가 나타났다. 2017년 결과를 보면, 전통이민국들과 북유럽 국가들의 이주민 환대 수준은 권리 영역과 소통·문화 영역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소통·문화 영역에서 전통이민국들(0.799)이 북유럽 국가들(0.729)에 비해 다소 높은 이주민 환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이민국들의 개방적 소통 문화 수준은 이민을 통한 국가형성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북유럽 국가들(0.698)이 전통이민국들(0.485)에 비해 이주민 환대 수준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주민 환대의 공생성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의 궤적을 반영한 것으로 잠정 해석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두 국가만을 포함하기에 지역 대표성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석한 결과만 놓고 본

13) '평균'은 23개 OECD 회원국들의 영역별 평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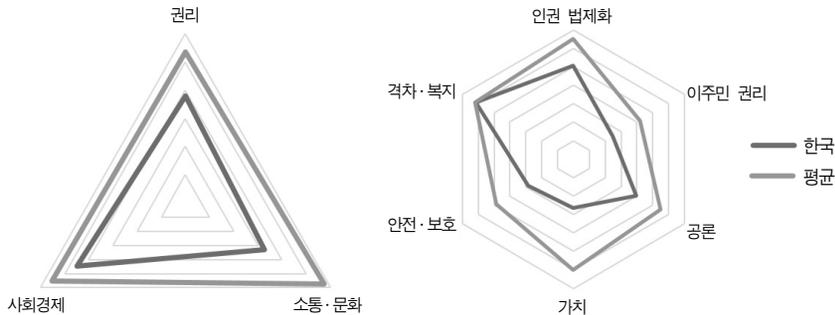
다면 모든 영역에서 크게 뒤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전통이민국들과 마찬가지로 OECD 23개국 전체 평균(0.553)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른 두 영역에서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소통·문화 영역에서 매우 낮은 이주민 환대 수준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주민 환대의 탈경계성 토대가 매우 취약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동북아 지역 내 혈통주의 문화 인식과 저개발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잠정 해석할 수 있다.

3) 한국의 위상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이주민 환대 수준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권리와 사회경제 영역에 비해 소통·문화 영역에서 전체 평균과 보다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소통·문화 영역에서는 한국이 터키를 제외하고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이주민 환대 수준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환대의 속성들 가운데 수평성과 공생성에 비해 탈경계성의 발현이 크게 뒤쳐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주민 환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통·문화 영역의 환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긴요함을 일깨워준다. 이런 점에서 소통·문화 영역과 두 하위 영역(공론과 가치)에서 모두 1위를

<그림 3>

영역별 23개국 평균과 한국의 비교(2017년)



차지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권리 영역을 구성하는 두 하위 영역들 가운데 ‘인권 법제화’와 ‘이주민 권리’ 수준은 각각 0.508과 0.248로 전체 평균값(0.651과 0.41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의 하위 영역들 가운데 ‘격차·복지’ 수준은 0.612로 전체 평균값(0.619)과 거의 같은 반면에, ‘안전·보호’ 수준은 0.285로 전체 평균(0.48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리와 사회경제 두 영역의 이주민 환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권 규범의 확산과 제도화, 이민 정책·행정의 권리 친화성 제고, 그리고 실효적인 사회경제적 안정망의 구축과 확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이민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환대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환대는 도덕주의나 급진주의¹⁴⁾ 담론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와 정치가 만나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채택한 개념이고, 이 지점에 주목하여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지표체계는 권리, 소통·문화, 사회경제의 세 영역에 걸쳐 총 15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23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일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환대 지수를 산출해 비교했다.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소통·문화 영역과 안전·보호 부문에서의 환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이민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이며, 인권 친화적인 이민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필요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는 이민정책 거버넌

14) 환대는 근대적 소유의 관념을 해체적으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전복적인 지향을 기저에 깔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스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는 이주민 외의 여타 사회적 소수집단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응용이 가능한 준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주민 환대 지수 지표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역과 지표 가중치 부여, 표준화 방식, 결측값 처리 방식, 지표체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다 세밀한 검증, 조사대상국 범위 확대 등 방법(론)과 관련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필자의 개인적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들이기에 향후 연구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작업을 통해 이주민 환대 지수의 신뢰도와 차별성, 그리고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것이다.

최초투고일 : 2018. 2. 6

논문심사일 : 2018. 2. 23

게재확정일 : 2018. 3. 20

부록: <표 4> 지표 자료 출처

| 자료 | 출처 | |
|---|--|---|
| WJP 법치지수 기본권 항목 점수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 https://worldjusticeproject.org |
| 18개 국제 인권 조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비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http://indicators.ohchr.org/ |
| 이주민통합정책지수(MIPEX) | 이주정책그룹(MPG) 외 | http://www.mipex.eu |
| 난민인정률 (당해 난민심사 결정건수 대비 협약난민 인정 건수 비율) | 유엔난민기구(UNHCR) | http://www.unhcr.org/statistical-yearbooks.html |
|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지수 | 프리덤하우스 | https://freedomhouse.org |
| 국경없는의사회 언론자유지수 | 국경없는의사회 | https://rsf.org/en/ranking |
| WVS 사회단체참여 문항 (Wave6 기준, V25-V33, V35) | 세계가치관조사(WVS)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 부패인식지수(CPI) | 국제투명성기구 | https://www.transparency.org |
| WVS 이웃으로서의 수용도 문항 (Wave6 기준, V37, V39, V41, V44) | 세계가치관조사(WVS)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 세계기부지수(WGI) | Charities Aid Foundation | https://www.cafonline.org |
| 상대적 빈곤율 | OECD,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 https://stats.oecd.org/ |
| 임시고용 고용보호지수 | OECD | https://stats.oecd.org/ |
|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 | OECD |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
| 지니계수 | OECD | https://stats.oecd.org/ |
| 젠더불평등지수(GII) | 유엔개발계획(UNDP) | http://hdr.undp.org/en/composite/GII |
|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 | OECD, "Net Total Social Expenditure, in % GDP" | https://stats.oecd.org/ |

참고문헌

- 강신욱·이현주·김석호·박수진·박은경.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철. 2017. “공생과 타자: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 이론에 관한 재고찰.” 『문화와정치』 제4권 2호, 5-45.
- 김종훈. 2016. “관용을 넘어 정의로: 데리다의 ‘환대(hospitality)’의 철학에 비추 본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육연구』 제9권 4호, 119-137.
- 김중관. 2013.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중동학회논집』 제34권 1호, 1-20.
-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 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개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12월).
- 김현경. 2016.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아·김준호·김현경·김서은.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6월).
- 문성원. 2018. “환대: 타자와 함께 하는 삶의 자세.” 한양대 평화연구소 워크숍 발표문(2018년 1월 22일).
- 박경래·박미량. 2009. 『부패범죄에 있어 관용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12월).
- 박 단. 2007. “프랑스의 이민자정책과 공화국 통합모델.” 『이화사학연구』 제35집, 29-58.
- 박명호. 2012. “지표 체계를 활용한 유럽과 동아시아 통합 연구.” 『EU학연구』 제17권 2호, 95-12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 『통계월보』 2017년 12월호.
- 손영창. 2016. “데리다의 증여이론.” 『대동철학』 제76집, 104-132.
-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희영·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11월).
- 이문수. 2014. “행정윤리와 타자성: 행정윤리의 철학적 전제의 재검토.” 『한국행정학보』 제48권 3호, 51-74.
- 이상원. 2018. “이기성의 끝 그리고 환대: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과 경제적 존재성 이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가제트 No.2018-G19.
- 이재열·조병희·장덕진·유명순·우명숙·서형준.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 국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제21권 2호.
- 장용석·박명호·오완근. 2011. “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 1-38.
- 정해식·구혜란·김성아. 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7권 4호, 370-405.
- 정해식·정홍원·구혜란·김성근·김성아·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병구·이용수·이경영·이승주·어수하·박명호. 2015.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채석진. 2017. “미디어, 일상, 환대: 매개된 타자와 ‘적절한 거리’ 만들기.” 『문화와정치』 제4권 3호, 5-43.
- 최진우. 2017. “환대의 윤리와 평화.” *OUGHTOPIA* 제32권 1호, 5-27.
- 케이조, 야마와키(山脇啓造). 2017. “이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인터컬츨러리즘과 다문화공생 2.0.” 2017한일미래포럼(5월 19일). 서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홍태영. 2017.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 5-34.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rown, Wendy 저. 이승철 역.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서울: 갈무리.
- Chun, Kyung Ock, and Kwang-Il Yoon. 2013. “MIPEX and Korea: Assessment and Lessons.”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 한국다문화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다문화 사회와 이주자 통합정책 지표분석’ 자료집(2013년 10월 11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Derrida, Jacques. 2000. *Of hospitality*. Rachel Bowlby tr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sen, Randall. 2012. *The Centrality of Employment in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 Phipps, Alison, and Ronald Barnett. 2007. “Academic Hospitality.” *Arts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6(3): 237-254.
- Silverstone, Roger. 2002. “Complicity and Collusion in the Mediation of Everyday Life.” *New Literary History* 33: 761-780.

- _____. 2007. *Media and Morality: On the Rise of the Mediapolis*. Cambridge, UK: Polity Press.
- Taylor, Charles. 1992.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d, Phil, and Charles Landry. 2008. *Intercultural City: Planning for Diversity Advantage*. London: Routledge.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Hospitality for Migrants

Han, Junsung

Research Fellow, Hanyang Peace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Choi, Jinw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

The idea of hospitality needs to be publicly discussed in a society like South Korea, which is in transition towards a country of immigration. The concept of hospitality refers to attitudes as well as practices on the basis of three values — transboundariness, equality, conviviality — when it comes to making relationship with social minority. In this light,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the Migrant Hospitality Index as part of efforts to measure the level of hospitality for migrants and construct the cultural political governance in an immigrant society. Hospitality for migrants is to be defined in terms of 15 indicators over the 3 dimensions — rights, communication and culture, and socio-economy. A cross-country analysis was conducted over 23 OECD member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society was ranked very low in the dimension of communication and culture(22nd) and the sub-dimens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21st). The level of institutional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migrants was also found quite low(19th). This implies the urgent need for policy discussion about how to improve the level of migrant hospitality in these areas.

▪ **Keywords:** migrants, Hospitality Index(HI), rights, communication and culture, socio-economy